

# 안전보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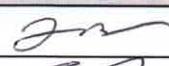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박성우	고미란	
	11/15	11/15	11/15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기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특별 <input type="checkbox"/> 일일 <input type="checkbox"/> 관리감독자 <input type="checkbox"/> MSDS <input type="checkbox"/> 수시	일시	2024년 11월 15일 9:00 ~ 11:00 금요일
장소	라임시스템 회의실	인원	총 6명 (남: 6명 / 여: 0명)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토의식 <input type="checkbox"/> 시청각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강사	윤수원

교육 내용	※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2023. 9. 27.>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규 및 고객사 규정 ○ 정보제공 자료 관련 교육 실시 (삼성전자 DS부문 11월 협력사 환경안전보건 소식지 내용 전달) ○ 당 현장 노사협의체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 당 현장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개선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 삼성전자 고객사 안전규정에 관한 사항 ○ 삼성전자 위험예지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Workbook 활용) ○ PSA/PHA 프로그램, 협력사 안전 슬로건 및 당사 A/I 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권 사용 절차,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에 관한 내용 ○ SEC 천안 현장 비상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

현장 소장 의견	
기타	

##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소속	성명	서명	순번	소속	성명	서명
1	라임시스템	고미란		11			
2	라임시스템	박성우		12			
3	라임시스템	배종민	배종민	13			
4	라임시스템	김병은	김	14			
5	라임시스템	한민성	한민성	15			
6	라임시스템	임재권	임재권	16			
7				17			
8				18			

# 사진대지



공사명	SEC 천안사업장 C1 LBS 셋업공사	일 시	2024.11.15
내 용	11월 정기안전보건교육		



공사명	SEC 천안사업장 C1 LBS 셋업공사	일 시	2024.11.15
내 용	11월 정기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임명장

소 속 : 라임시스템

직 책 : 대 표

성 명 : 윤 수 원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사업장내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내 관련되는 기계 ·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 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수행시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 1)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2) 당해 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 3)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2024년 10월 14일

대 표 자 윤 수 원



관리감독자 서약서(협력사 용)

협력사	라임시스템	직책	대표이사
성명	윤수원	생년월일	831222

상기 본인은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귀사의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정해진 관리감독자로서 성실한 역할을 다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하 기 -

1.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소속근로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본인 또는 소속근로자가 상기사항을 소홀히하여 귀사로부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받더라도 절대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 당사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공기구의 안전장치를 항상 점검하고 작업장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 다음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관리감독자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⑥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 ⑦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24 년 10 월 25 일

협력사 관리감독자 :

윤수원



발급번호 : 안기협 202406B02-0008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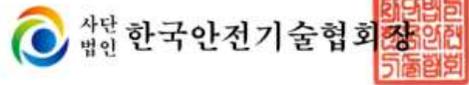


# 수료증

성 명 윤수원  
 사업장 라임시스템  
 과 정 관리감독자 교육 (서비스 및 기타사업)  
 교육기간 2024-06-15 ~ 2024-07-14  
 교육시간 8 시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 년 7 월 17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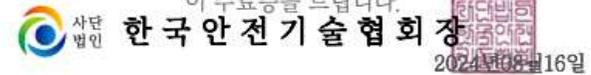
발급번호 : 안기협 24-3258호



# 수료증

성 명 윤수원  
 사업장명 라임시스템  
 과 정 ▶혼합할인 Event◀ 비대면 관리감독자 교육 서비스  
 교육기간 2024.08.14  
 교육시간 8시간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위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11월호]

# 협력회사 환경안전보건 소식지

글로벌 제조  인프라총괄  
상생EHS팀

※ 2024-11월호 발송이력

1. 최초송부 - R1. 2024.11.06

※ 문의사항은 주제별 우측 상단에 기재된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안전 현안	사고예방/법규준수 (필수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 안전담당자 DRI 참여 안내</li> <li>- 중대재해예방 안전강화 정책 준수(One Strike Out)</li> <li>- 작업팀장 역할 기준 안내 및 준수 요청</li> <li>- 전/중/후 체크시트 작성 안내</li> <li>- 비계 사용 이력 확인을 위한 NFC 활용 요청</li> <li>- 작업안전가이드공유(천장속 작업)</li> </ul>
	안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사고사례/안전교육</li> <li>- EHS평가 수검 가이드 업데이트 안내</li> <li>- 작업중지권 사용 안내</li> <li>- '24년 하반기 Full Process 설명회 안내</li> <li>- 사업장 내 교통안전수칙 수칙 준수 안내</li> <li>- 디젤차량 사업장 입문 제한</li> <li>- 단기성 차량 사업장 입문 제한</li> <li>- [교육안내] DS부문 안전리더십 특강</li> </ul>
대외동향 및 사규 변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공단 2024 인터넷(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안내</li> <li>- 10월 사내 규정 변경점 안내</li> </ul>
협력회사 우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10월 협력회사 안전보건 우수 사례</li> </ul>

#1.

# 환경안전 현안

<p>사고예방/법규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협력사 안전담당자 DRI 참여 안내</b></li> <li>- 중대재해예방 안전강화 정책 준수(One Strike Out)</li> <li>- 작업팀장 역할 기준 안내 및 준수 요청</li> <li>- 전/중/후 체크시트 작성 안내</li> <li>- 비계 사용 이력 확인을 위한 NFC 활용 요청</li> <li>- 작업안전가이드공유(천장속 작업)</li> </ul>
<p>안전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생활 사고사례/안전교육</b></li> <li>- EHS평가 수검 가이드 업데이트 안내</li> <li>- 작업중지권 사용 안내</li> <li>- `24년 하반기 Full Process 설명회 안내</li> <li>- 사업장 내 교통안전수칙 수칙 준수 안내</li> <li>- 디젤차량 사업장 입문 제한</li> <li>- 단기성 차량 사업장 입문 제한</li> <li>- [교육안내] DS부문 안전리더십 특강</li> </ul>

# 1. 환경안전 주요 현안 - 협력사 안전담당자 DRI 참여 안내

**“작업 전 DRI 진행 시 안전담당자 참여 바랍니다.”**  
 (협력사 안전담당자가 해당 작업의 DRI에 참여하여 안전관리 바랍니다.)

**“DRI(D-1 Risk Inspection)”는 작업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DRI 회의에 협력사 안전담당자가 참여하여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확인 후  
 안전하게 작업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요청 드립니다.**

\* DS-EHS에 등록된 DRI 또는 기존 DRI 양식 2가지 모두 활용 가능

작업자 정보							
* 전자담당자	<input type="text"/>	Q	* 담당자부서	<input type="text"/>	* 작업업체	<input type="text"/>	Q
* 작업업체 안전담당자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작업업체 소장	<input type="text"/>	
* 작업인원	<input type="text"/>		관계사(공사팀)	<input type="text"/>	관계사(안전팀)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DRI Check Sheet [ <input type="checkbox"/> 평일 <input type="checkbox"/> 휴일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당일]										
(DRI : D-1 Risk Inspection)										
작업일자	세부위치 (설비호기)	사용장비	작업유형 (설치, 철거, 보수, 개조)	협력사명	OOENG	작업내용 : SOP명 (투입인원 : OO 명)	관계사	SEC		
'18.00.00 (주간, 야간)				협력사 안전	성명	세부작업 내용	부서명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협력사 소장	성명		공사팀	성명		
							안전팀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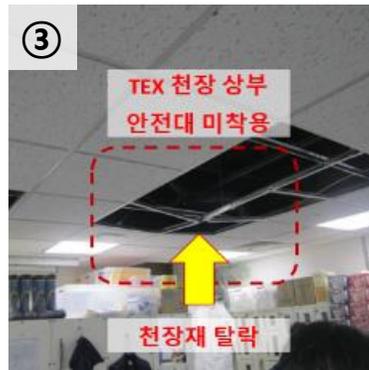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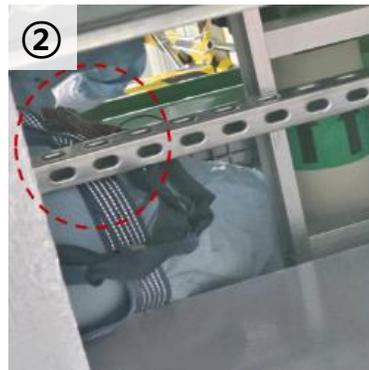
## “중대재해 예방 안전강화 정책(One Strike Out 제도) 준수 안내” (5대 안전강화 항목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10월 위반 발생 사례 공유** 드리오니, 내용 확인하시어 **24년 남은 기간 강화 항목 반드시 준수하여 현장 안전관리 바랍니다.**

또한, **안전담당자는 현장 작업 특이사항 발생 시 전/중/후 체크시트에 꼭 작성 바랍니다.**(특이사항 없을 시 공란으로 관리)

### □ 발생 사례(3건)

- ① 고소 작업 중 파이프랙 상부에서 **안전고리 미체결**(10/7)
- ② 격자보 상부 케이블 포설 작업 시 **안전고리 미체결**(10/21)
- ③ TEX 천장 상부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10/21)



“위반자 ‘One Strike Out’ 패널티 적용”

### □ 5대 안전강화 항목

- ① [추락] 고소(2m이상) 작업 시 안전고리 미체결
- ② [접액] 화학물질(Chemical, Gas) 취급 작업 시 보호구 미착용
- ③ [질식] 밀폐공간 호흡기 보호구 미착용/산소, 유해가스 미측정
- ④ [감전] 전기 활선(근접) 작업 시 절연보호구 미착용
- ⑤ [전도/낙하] 크레인 양중제한 초과 및 붐대 장비 안전장치 임의 해제

### 위반시 패널티

- 작업자 : 최소 출입제한 1년
- 안전담당자 : 자격취소 6개월

\* 기간 종료 후 복귀 시 특별교육 절차 이수 필요

## One strike out 제도 복귀자 『특별교육』 안내 (특별교육을 모두 수료해야만 복귀 가능합니다)

### □ 교육 신청 대상

- **작업자**: 5대 안전강화 항목 위반자, **출입제한 만료 후 특별교육 신청 및 수료** 필요 (5개+α 과정) \* **협력사 환경안전 포탈**(<https://partner.ehs.samsung.com/wp>)에서 신청
- **안전담당자**: 5대 안전강화 항목 위반 작업의 안전담당자, '위험작업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업무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 **자격취소 만료 후 특별교육 프로그램 신청 및 수료** 필요 (4개 과정)

### □ “**작업자**” 복귀 특별교육

과정명	시간(Hr)	평가방법	수료기준
DS 내방교육(유해화학물질 종사자)	3	-	
안전담당자 Basic / Advanced	16	태도/지필	90점 ↑/100점 ↑
위험성 평가 Basic / Advanced	8	실습	<b>90점 ↑</b>
직무인증*(위반작업 해당 교육과정)	2~8	지필	<b>90점 ↑</b>
<b>계</b>	<b>29 ~ 35</b>	-	-

### □ “**안전담당자**” 복귀 특별교육

과정명	시간(Hr)	평가방법	수료기준
안전담당자 Basic / Advanced	16	태도/지필	90점 ↑/100점 ↑
위험성 평가 Basic / Advanced	8	실습	<b>90점 ↑</b>
<b>계</b>	<b>24</b>	-	-

#### \* 위반작업 해당 직무인증 교육

- 1) [추락] 고소(2m이상) 작업 간 안전고리 미체결로 위반자 → 고소작업 직무인증 교육 신청
- 2) [접액] 화학물질(Cheical, Gas) 취급 작업 시 보호구 미착용 → 화학물질 취급 작업 직무인증 교육 신청
- 3) [질식] 밀폐공간 호흡기 보호구 미착용/산소, 유해가스 미측정 → 밀폐공간 작업 직무인증 교육 신청
- 4) [감전] 전기 활선(근접) 작업 시 절연보호구 미착용 → 전기작업 직무인증 교육 신청
- 5) [전도/낙하] 크레인 양중제한 초과 및 붐대 장비 안전장치 임의 해제 → 중량물/양중작업 직무인증 교육 신청

### □ 수료기준 : 특별교육 중 "위험성평가 및 직무인증 교육"의 수료(평가) 기준은 상향 적용 (80점 → 90점 ↑)

# 1. 환경안전 주요 현안 - 작업팀장 역할 기준 안내 및 준수 요청

※ 문의처 sdaffgh.kim@samsung.com, 031-325-0465

## “작업팀장(협력사 TBM 리더) 역할 정립”

(작업팀장의 역할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현장 안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전반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작업팀장은 위험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 **작업팀장(협력사 TBM리더) 역할 정립** ※ 위험작업 안전관리 규정 내 반영 완료(24.11월 시행)

정의 : 작업팀장은 **위험작업별 작업팀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자**를 말한다.

#### 1 **작업 전 현장 준비 상태 확인(보호구 등)**

작업 전 **안전담당자가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및 장비(안전대 부착대, 확성기 등)의 착용 및 확보 이상여부를 점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작업 전/중 변경사항 반영 및 작업팀 교육**

작업 전/중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변경점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DRI 반영**하고 **작업팀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한다.

#### 3 **작업 전 작업 위치 확인 후 안전담당자 배치**

해당 작업 전 **작업위치를 확인하여 감독이 용이한 장소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작업장소 분리로 인해 안전담당자가 감독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안전담당자 추가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작업 전 현장 준비 상태 확인(보호구 등)**

작업 전/중 시설결함, 안전시설물 설치 불가 등 **위험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 5 **안전담당자 요청 사항 반드시 조치**

**안전담당자가 위험상황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한다.

# 1. 환경안전 주요 현안 - 전/중/후 체크시트 작성 안내

※ 문의처 sdaffgh.kim@samsung.com, 031-325-0465

## “전/중/후 체크시트 작성 방법 안내” (해당 작업 전/중/후 체크시트 활용하여 작성 바랍니다.(REV.23))

### □ 작업 변경사항 임직원 전달 내용 작성

- 작업 변경사항 기록/전달은 24.08월부터 변경되었으며, 전/중/후 체크시트 작성 방법에 대해 세부기준 공유드립니다.

### □ 작업팀장(협력사 TBM리더) 성명 및 서명 작성

- 24.11월부터 시행되며 작업팀장은 본인의 역할을 인지하고 전/중/후 체크시트 성함, 서명 작성 및 현장안전관리 요청드립니다.

■ 작업 전/중/후 Check Sheet (□위험 □화기) - 장소: (수기) 세부장소기록 작업명: (수기)

※ 점검 항목 중 해당 사항에 대하여만 확인 후 표기 할 것

구분	점검항목 (□만 및 ○번호에 체크 하도록 함)	작업일자 /				
현장확인	㉔ 작업구간(작업위치) 접근 경로 포함내 작업환경 점검 ※ 시설물(가동화물(OH)등), 전기(수동식 제어물, 스프링클러, 완지기, 비연, 덕트 등) 간섭/제출, 유압 Leak, 파손/변형 점검 가능성 End-cap 미설치, LOTO/벨트/전동, 위험/제인부위, 유류 표시사항, 기타 위험요소 ㉕ 작업변경사항 : 있음 / 없음 ㉖ 작업변경사항 : 있음 경우 ㉔ ㉕ ㉖ ㉗ ㉘ ㉙ 임직원 전달시간 : ㉚ 작업명/내용 :	① / ②	③ / ④	⑤ / ⑥	⑦ / ⑧	⑨ / ⑩
	㉛ 환경/안전/위험요인 : ㉜ SOP DR: 비치 및 교육실시여부 ㉝ 동경비 순전자 면허 ㉞ MSDS 게시 및 실제 취급물질의 일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No	성명	서명(전/후)	No	성명	서명(전/후)	No	성명	서명(전/후)	No	성명	서명(전/후)
1	작업팀장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전/중/후 체크시트 하단 금일 작업 TBM 교육 이수 인원 작성 : 1번란에 작업팀장(협력사 TBM리더) 성함 및 서명 작성 필수

**목적 : 2일 이상 진행되는 작업에 대해 당일 작업 마무리 후 변경점을 공유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

- 1개의 허가서 내에서 작업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작성 후 임직원 전달
- 작성 내용 : DRI에 작성한 위험요인, 안전대책, 사용기계기구, 기타 협의사항 등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 2일 이상 작업에 대해 1일용 체크시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용 체크시트에 작성

(참고) 전중후 체크시트 양식 내 첫번째 서명칸 내 “작업팀장” 글씨 반영 일정

No	성명	서명(전/후)
1	작업팀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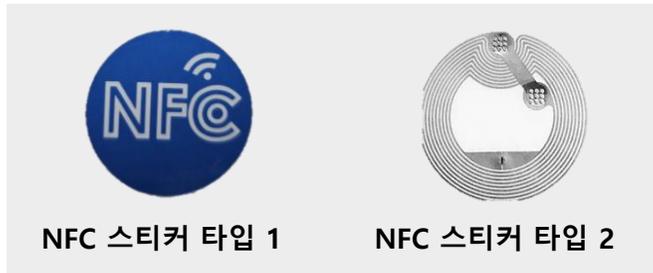
- ① 전중후 체크시트 양식(REV.23) → 반영완료
  - ② 시스템 자동 생성 전중후 체크시트 → 반영예정 (12월 이후)
- \*교육강사 서명란 상단 안내(“※첫번째 성명/서명 칸의 경우 작업팀장이 작성할 것”)를 통해 작업팀장이 해당 내용 인지 가능

# 1. 환경안전 주요 현안 - 비계 사용 이력 확인을 위한 NFC 활용 요청

※ 문의처 [kamarad.kim@samsung.com](mailto:kamarad.kim@samsung.com)

## “비계 사용 이력 확인을 위한 NFC 활용 요청” (비계에 부착된 NFC를 활용하여 사용 이력 입력 부탁드립니다.)

### □ 비계 사용이력 확인용 NFC 도입 안내



■ NFC 부착 위치 :

**부착위치**



비계 설치/해체 계획서 중앙 상단 부착

비계 사용 중 점검

koreatidal0402@gmail.com [Switch account](#)

Not shared

\* Indicates required question

비계관리번호(자동입력된 경우 수정금지) \*

**H111111**

업체명 \*

Your answer

작업유형 \*

위험/화기작업

일반작업

Other:

<설문화면>

### □ NFC 태그 활용 가이드

- 누가 : **안전담당자 또는 작업팀장 1인이**
- 언제/무엇을 : 비계 수정(위험작업) 및 기 설치된 **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위험/화기/일반 작업 시(오후/오전 작업 전 각 1회)** 사용 점검  
\*개인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인프라 작업 구간 한정
- 어떻게 : 비계 설치/해체 계획서에 **기 부착된 NFC를 개인 모바일 폰으로 TAG 후 점검**

### (참고)NFC 설문 진입 방법

- ① NFC 태그 전 스마트폰 NFC 기능 활성화
  - \* 안드로이드 : ①설정 → 연결 → NFC 및 비접촉 결제 → NFC 태그 읽기 쓰기 활성화 또는 ②설정 → 연결 → NFC → 기본모드 활성화
  - \* iOS : 별도 활성화 필요 없음
- ② 스마트폰 뒷면을 NFC에 태그 후 설문 입력 및 제출



NFC활용상세 가이드

## 추락사고예방 “천장속 작업안전 가이드” (협력회사 자체 안전보건교육 자료 활용)

### □ 천장 구분 \* DS부문 공사안전관리 규칙

#### 『 System Ceiling 』

: Clean Room 조성을 위해 FFU(Fan Filter Unit)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천장 구조물, Clean Class가 높은 Room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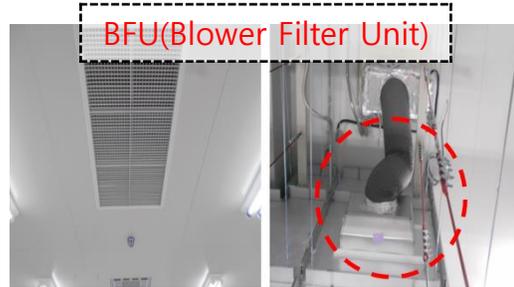
#### • Blind Panel

: System Ceiling의 T-Bar 구조물에 설치하는 정방향의 천장 판넬



#### 『 복합판넬천장 』

: Clean Room을 조성하기 위하여 BFU (Blower Filter Unit)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천장 구조물, Clean Class가 낮은 Room에 적용



#### 『 일반천장(Tex, 마이톤 등) 』

: E/V 전실, 화장실,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천장 마감재

### □ 천장속 작업 \* DS부문 공사안전관리 규칙

#### 『 근로자 행동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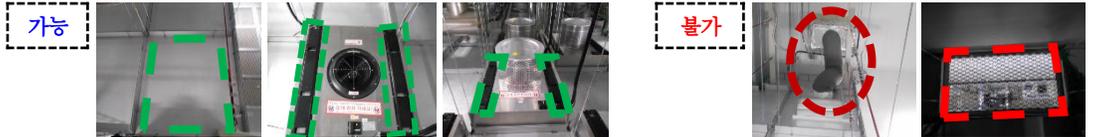
##### 1) 천장 속 작업 전

- 작업계획서 또는 출입인원, 관리대책 포함된 DRI를 작성하고 승인을 득함
- 작업전 개구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사전 확인

##### 2) 천장 속 작업 중

- 천장판넬의 1장당 탑승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 (허용하중 150kg)

\* 천장 뚫음 구조물 참고



- 자재 천장판에 적재 시 1장당 60kg 이내로 적재
- \* 자재 적재된 천장판에는 1인만 탑승 가능
- 천장 속 생명줄 또는 달대 등 구조물에 안전고리 체결 **必**
- 일반천장(TEX, 마이톤)은 상부작업시 천장재 해체를 원칙으로 함

- \*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유관부서(시공, 환경안전부서) 협의 후 DRI에 반영  
>> 안전더하기(구.손들기)를 통해 환경안전 협의 요청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사고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작업자 안전 교육 요청드립니다”

### □ 사업장 내 발생 가능 사고 사례

기계실 이동 중 넘어짐



- **개요:** 기계실에서 보행 중 넘어짐
- **원인:** 바닥 물기 등 위험 확인 미흡
- **대책:** 보행 중 전방 주시 유의

식당 이동 중 넘어짐



- **개요:** 식당 내에서 보행 중 넘어짐
- **원인:** 이동 시 주의 미흡
- **대책:** 보행 중 안전에 유의

화장실 이동 중 넘어짐



- **개요:** 화장실에서 보행 중 넘어짐
- **원인:** 칸 내부 물기 미확인
- **대책:** 화장실 바닥 물기 유의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사고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작업자 안전 교육 요청드립니다”

### □ 사업장 내 발생 가능 사고 사례

FAB 내 이동 중 넘어짐



- 개요: FAB 내 이동 중 넘어짐
- 원인: 퇴실 중 본인 발에 걸려 넘어짐
- 대책: 보행 중 안전에 유의

테이블에 발 부딪힘



- 개요: 이동 중 테이블 다리에 발 부딪힘
- 원인: 이동 공간 협소
- 대책: 협소 공간 이동 시 장애물 유의

이동 중 카트 모서리에 부딪힘



- 개요: 이동 중 카트 하단에 부딪힘
- 원인: 보행 중 장애물 확인 미흡
- 대책: 전방 주시 유의 및 통로 확보

## “계약 EHS 평가 수검가이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계약 EHS 평가 자료 제출 전 rev 3.0 확인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 □ EHS 평가 수검 가이드(rev3.0) 업데이트

#### - 별첨 2. 비대상 확인서 양식 수정

비대상 확인서			
1	회사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업체	사업자등록증 내 업체로 작성	
4	종업원수	4대 사회보험 가입인원 기준(DS 부문 출입 인원)	
5	법적 대상 여부 확인	도급신고 (화학물질관리법 31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도급승인 (산업안전보건법 59조) ○/×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여부)
6	자기진단 작성자 & 평가 서류 제출자	부서명	직책(or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 비대상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하위 기재 4은 추가 감경의 사유가 됨)

NO.	제출서류	판정 기준	검토 결과	세부 검토 결과(구체적 작성)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대상	예시) * 아래의 예시는 저우고 작성요망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경우 제외업종 2.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건설업종
2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6	자체선임/위탁선임/비대상	예시) * 아래의 예시는 저우고 작성요망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식료품 제조업종 2.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종
3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6	자체선임/위탁선임/비대상	예시) * 아래의 예시는 저우고 작성요망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식료품 제조업종 2.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종
4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대상	예시) * 아래의 예시는 저우고 작성요망 1. 시행규칙 별표 5 '단'에 해당하는 제 1호부터 4호까지의 작업이 없음
5	하도사 재해예방 적격성 평가 여부 및 도급협의체 회의록/합동점검	하도사 운영 여부	대상/비대상	예시) * 아래의 예시는 저우고 작성요망 1. 하도사 운영하나, DS와의 계약과 무관함 2. 하도사 운영하지 않음
6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대상/비대상	예시) * 아래의 예시는 저우고 작성요망 1. 시행규칙 별표 22에 해당하지는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를 사용하지 않음 2. 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확인하였음

당 사업장의 위와 같은 사유로 “EHS 법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합니다.

계약 EHS 평가 진행이 DS부문과의 거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여부를 하위로 기재 하였을 경우, EHS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함

### □ 주요 변경 사항

No.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	종업원 수	회사 단위 인원	① 회사 단위 인원 ② DS 부문 출입 인원
2	법적 대상 여부 확인	-	① 도급신고(화관법) ② 도급승인(산안법) ③협의체(산안법)
3	하도사 평가 및 도급 협의체/합동점검	① 하도사 평가 ② 도급 협의체/합동점검	2개 항목 통합
4	비대상 검토 결과	대상/비대상 여부만 기입	항목 별 검토결과 구체화 * 예시) 자체/위탁선임/비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35호)

## “작업중지는 작업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현장에서 위험 발견 시 적극적인 작업중지 요청드립니다.)

### □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가목
3. 표준계약서 (근로자의 안전확보권)

※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근로자는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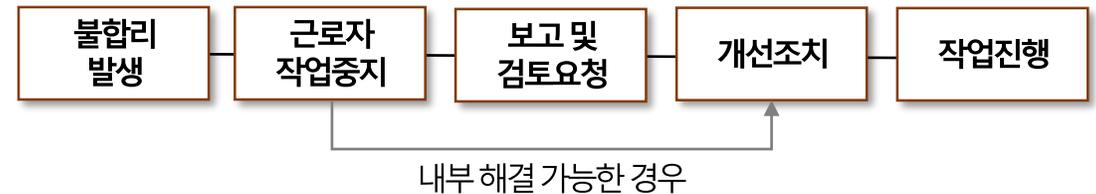
### □ 작업중지 요건

**누가** 1. DS부문 임직원 및 협력사 작업자 누구나

**언제** 1. 법규, 사규, SOP미준수 등 불안정한 상황 확인 시  
2. 작업 중 산업재해를 유발할 불합리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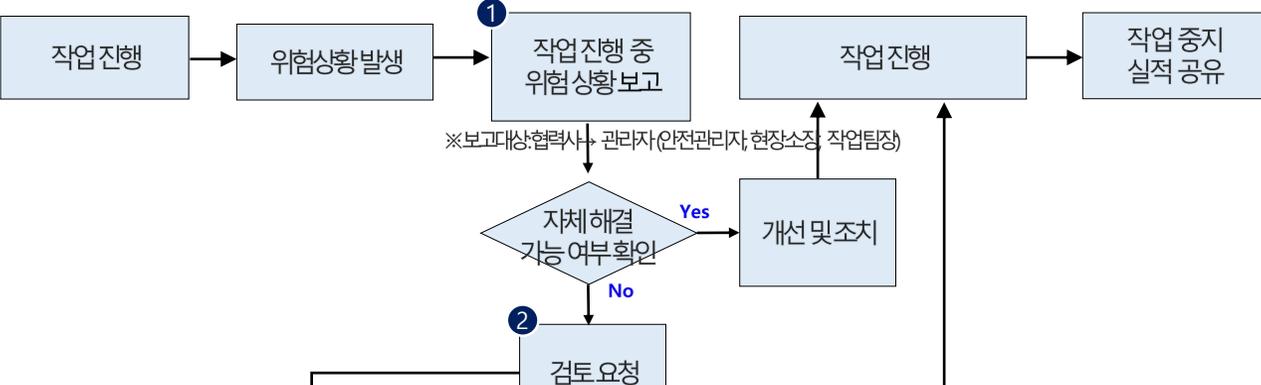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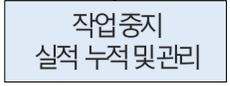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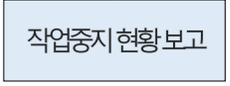
※ 그 외 작업 전, 중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할 경우 언제든지 작업중지 가능

### 어떻게



**작업중지 발생 시 [PEPS\(협력사환경안전포털\)](#) - 위험발굴에 등록부탁드립니다.**

# 1. 환경안전 주요 현안 - 작업중지권 사용 안내

구분	작업 중	작업 후	업무
<p>협력사</p>	 <p>※보고대상: 협력사, 관리자(안전관리자, 현장소장, 작업팀장) ※검토: 운영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 중 위험상황 발생시 작업을 중지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한다.</li> <li>※보고대상: 관리자(안전관리자, 현장소장, 작업팀장)</li> <li>- 위험상황이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자체 해결 후 작업을 진행한다.</li> <li>-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부서에게 검토요청한다.</li> <li>- 협력사는 작업중지가 발생 시 빠른시일 내 협력사환경안전포털 위험발굴 시스템에 등록한다.</li> </ul>
<p>운영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중지 검토 요청에 대해 조치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한다.</li> </ul>
<p>사업부 EHS팀</p>			
<p>상생 EHS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중지 실적은 누적 및 관리 하고 우수사례는 홍보 및 공유</li> </ul>
<p>안전보건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작업중지 현황 최고안전보건 책임자(CSO) 보고(반기)</li> </ul>

# 1. 환경안전 주요 현안 - '24년 하반기 Full Process 설명회 안내

※ 문의처: eajoh.lee@samsung.com, 031-8037-8829

## “준수도평가 불합리 확인 또는 소명 필요시 참석 부탁드립니다”

### □ 배경

- 설명회를 통해 Full Process 절차 및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불합리 소명 등 협력사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평가 신뢰성 확보

### □ 안내사항

- Full Process 절차 및 배점 기준
- 24년 하반기 결과 및 Ground Rule
- 현장평가 관련 의견 청취
- 협력사별 불합리 안내 및 소명  
※ 하반기 인센티브 반영전 필수 확인 필요(인센티브 대상사)

### □ 일정

일시	장소	대상
12월 2일(월) 14시~	기흥 SR3동 1층 대강당	현장소장 or 안전관리자 or 참석희망자
12월 3일(화) 14시~	평택 사무1동 5층 채움홀	
12월 4일(수) 14시~	천안 복지동 2층 이음홀	
12월 5일(목) 14시~	사외 평택아카데미 10층 대강당	

※ 설명회 1시간 이내 종료 후 협력사별 결과 확인/소명 진행

### □ 기타사항

- 사업장 출입/내방신청 필요시 평택아카데미 설명회 참석 필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16, 내방신청 불필요, 주차불가]

# 1. 환경안전 주요 현안 - 사업장 내 교통안전수칙 준수 안내

※ 문의처: dh3452.ryu@samsung.com, 031-6191-3411

## “사업장 방문 시, 교통안전수칙 준수 필히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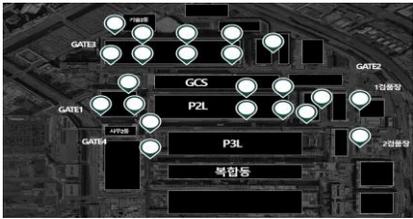
평택사업장

## 교통용 CCTV 운영 구간 확대 안내

**안 내** \* 13개소 → 22개소 확대 운영  
 '24.11월부터 평택사업장 내 교통용 CCTV 운영 구간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24.4월부터 계도 운영 완료 및 정식 운영중에 있으며, 수칙 위반 차량 대상 환경안전지시서 발부 예정이오니 안전 운전 부탁드립니다.)

**기 간** '24.11.01(금) ~

**장 소**



**주요 수칙**

- 고임목 설치**  
· 화물/중장비/버스/승합차: 고임목 + 사이드브레이크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보행자 횡단보도 이동 중 보행자 사이 운행 시, 일시정지
- 정지 구역(정지선)에서 주행 시,
- 규정속도 준수**  
· 시내 25km/h 이하 주행
- 지게차/주차장 10km/h 이하
- 불법 유턴 금지**  
· 유턴 가능 표시 구역 제외 모든 구역 유턴 금지
- 지정장소 내 주차**  
· 소화전 등 비상시설 설치 지역은 주차차 금지
-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조작 금지

평택안전그림

## 사내 고임목 설치 규정 강화

**☑ 설치 대상 (승용 제외)**

[AS-IS]  
: 사업장 내 운행하는 모든차량  
→ 임원, 업무, 협력사, 승용차 포함

↓

[TO-BE]  
: **승합, 화물, 중장비 차량 (승용 제외)**



**☑ 설치 시점**

사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주/정차, 운전자 부재 시

→ 옥내주차장 내 승용차 고임목 설치 제외

※ 옥내주차장 기준

- 평택: P1L/P2L 지하 주차장
- 화성: H1 자재창고 앞, MR2 1층, DSR지하, 16L지하, 17L지하, V1L지하주차장

● 고임목 설치 규격

휠(인치)	고임목 높이	고임목 폭
13~16	10cm 이상	10cm 이상
17~21	13cm 이상	12cm 이상
22~25	17cm 이상	12cm 이상
26~30	20cm 이상	12cm 이상

**☑ 설치 위치**

1. “운전석 앞 바퀴”의 앞/뒤에 설치
2. 파손되지 않는 “녹색고임목” 설치



※ 고정 스토퍼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설치 가능




# 1. 환경안전 주요 현안 - 사업장 내 교통안전수칙 준수 안내

※ 문의처: dh3452.ryu@samsung.com, 031-6191-3411

**“P3L 서측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현장 적발 시 지시서 발부 예정입니다.”**  
(반드시 주차구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 Issue 내용

- P3L 서측 주정차에 따른 차량 통행 혼선 발생



## □ 현장 사진



## “친환경차량 전환예정일 만료에 따른 사업장 입문 제한 안내”

(전환예정일이 2024-12-31인 디젤차량은 친환경차량으로 전환 바랍니다)

### □ 그린모빌리티 전환

- 사업장 내 입문하는 디젤차량을 단계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그린모빌리티 전환 정책을 적용 중입니다. ('21. 7월~)

### □ 전환예정일 만료 대응

- 협력사 환경안전PORTAL에 등록된 디젤차량 중 전환예정일이 2024-12-31인 차량 550대는 **2025년1월부터 사업장 내 입문이 제한됩니다.** 전환예정일이 2025-12-31인 차량은 관련 없습니다.

- 협력사 환경안전PORTAL에서 차량 정보 확인하시어 **전환예정일이 만료되기 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바랍니다.

- 전환이 어려울 경우 문의하기에 사유 작성 바랍니다.

승용/승합차 : 예외없이 전환 진행

화물차: 디젤 이외의 연료형식 차량이 미출시 시 예외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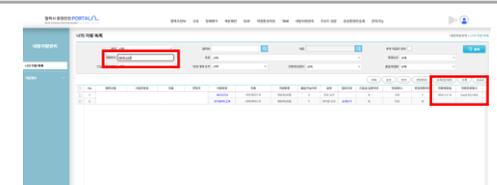
### □ 차량정보 확인 및 전환/수정방법

- 협력사 환경안전PORTAL → 내방차량관리 → 나의차량목록

① 차량번호 검색 → 전환예정일 확인

②-(1) [차량전환후] 체크박스 체크 → 전환완료 → 전환완료일 등록

②-(2) [차량전환 불가시] '문의하기' 또는 soy24.kim@samsung.com으로 사유 및 증빙 제출

<p>내방차량관리 접속 * 협력사환경안전PORTAL</p> 	<p>① 차량번호 검색, 전환예정일 확인</p> 
<p>②-(1) 전환완료 클릭</p> 	<p>②-(2) 문의하기에 사유 작성</p> 



# 1. 환경안전 주요 현안 - [교육안내] DS부문 안전리더십 특강

※ 문의처 healim.park@samsung.com, 031-8037-8043

**“현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리더십 특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번 특강 이후 수요 파악하여 '25년도 정기과정 검토 예정)



## 현장을 지키는 안전리더십 특강

**대 상**  
현장 관리감독자 / 작업팀장 / 안전관리자 등  
150명 (선착순) ※ 하기 양식 작성 후 회신 필요

**일 시**  
11/20일 (수) 09시 ~ 16시

**장 소**  
평택 협력사 아카데미 10층 대강당

 신청양식 회신처: 박혜림님 / [healim.park@samsung.com](mailto:healim.park@samsung.com)

첨부3. 안전리더십 특강 신청양식

#2.

# 대외동향 및 사규 변경점

대외 동향  
& 사규 변경점

- 안전보건공단 2024 인터넷 교육과정 개설 안내
- 10월 사내 규정 변경점 안내

상생EHS팀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 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 함을 안내드립니다”

### □ 배경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 교육센터를 개설함을 안내드립니다. 공단요청사항으로 해당 교육센터 홍보 및 접속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분께선 적극 활용바랍니다. [무료교육과정]

### □ 교육접속방법

1. 접속사이트 <https://edu.kosha.or.kr/main.do#none>
2. 교육신청 절차 ※ 신청세부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 교육과정

인터넷 교육과정	
교육분야	과정명 (시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STEP1) (2H)
	중·소규모 산재사업장 사업주 교육(STEP1) (2H)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을 위한 사업주 교육(I) (2H)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을 위한 사업주 교육(II) (2H)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을 위한 사업주 교육(III) (2H)
지역특화 사망사고 예방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근로자 교육(민간) (3H)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근로자 교육(공공) (3H)
법정·정책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 (8H)
	항만하역업 담당자 교육 (2H)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화재감시자) (2H)
기본교육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I) (2H)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II) (2H)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III) (2H)

### ■ 표준/SOP 변경요약

순서	구분	표준명
1	개정	(규정) 위험작업 안전 관리 규정
2	개정	(규칙) DS부문 안전보호구 기준

## 2. 대외동향 및 사규 변경 - (규정) 위험작업 안전 관리 규정

※ 문의처 sdaffgh.kim@samsung.com, 031-325-0465

변경사항 적용범위	사업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안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괄 환경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사업부 환경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영부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사	
주요 개정내용	<input type="checkbox"/> TBM리더(작업팀장)의 정의 및 역할 명확화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없음>			<신설> 3.19 작업팀장은 위험작업별 작업팀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자를 말한다.  4.6 작업팀장(협력사 TBM리더) 4.6.1 작업 전 안전담당자가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및 장비(안전대 부착대, 확장기 등)의 착용 및 확보 이상여부를 점검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4.6.2 작업 전/중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변경점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DRI 반영하고 작업팀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한다. 4.6.3 해당 작업 전 작업위치를 확인하여 감독이 용이한 장소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도록하며 작업장소 분리로 인해 안전담당자가 감독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안전담당자 추가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6.4 작업 전/중 시설결함, 안전시설물 설치 불가 등 위험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을 재개 해야 한다. 4.6.5 안전담당자가 위험상황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조치 후 작업을 재개 한다.			

### I 대응 필요사항

- 총괄환경안전부서  
: 표준 개정
- 사업장/사업부환경안전부서  
: 개정사항 준수 및 임직원 전파
- 운영부서  
: 개정사항 준수 및 협력사 전파
- 협력사  
: 개정사항 준수
- 납기  
: 즉시

## 2. 대외동향 및 사규 변경 - (규정) 위험작업 안전 관리 규정

※ 문의처 sdaffgh.kim@samsung.com, 031-325-0465

변경사항 적용범위	사업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안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괄 환경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사업부 환경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영부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사	
주요 개정내용	<input type="checkbox"/> A형 사다리 고정 방법 및 무인캐스터 관리 기준 수립					
	개정 전			개정 후		
	7.20.2 A형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A형 사다리의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7.20.2 A형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평탄,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A형 사다리의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b>높이 1m 이상의 사다리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고정한다.</b>		

### I 대응 필요사항

- 총괄환경안전부서  
: 표준 개정
- 사업장/사업부환경안전부서  
: 개정사항 준수 및 임직원 전파
- 운영부서  
: 개정사항 준수 및 협력사 전파
- 협력사  
: 개정사항 준수
- 납기  
: 즉시

# 2. 대외동향 및 사규 변경 - (규칙) DS부문 안전보호구 기준

※ 문의처 heesoeb.lim@samsung.com, 031-8037-8960

변경사항 적용범위	사업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안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괄 환경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사업부 환경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영부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사	

유해인자 정합성 확보를 위한 보호구 변경(방열 → 방염) \* 방열 : 복사열에 대한 보호, 방염 : 화염에 대한 보호

개정 전		개정 후																															
<p>별첨1. 보호구 관리 요령 및 상황별 착용 기준 (PCS) Scrubber 정기점검</p>																																	
<table border="1"> <tr> <td>Hfo 공정 플라즈마 전처리 장치 PM작업</td> <td>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or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방열장갑, 방염복</td> </tr> <tr> <td>ZrO공정 Dry Pump 이설/철거 작업</td> <td>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방열장갑, 방염복, 반면형 방독 마스크</td> </tr> <tr> <td>ZrO공정 Divert Pump 교체작업</td> <td>안전모, 안전화, 전면형 방독마스크, 방열장갑, 방염복</td> </tr> <tr> <td>Precursor(3류위험물) 용기교체작업(공병해체)</td> <td>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td> </tr> <tr> <td>Precursor(3류위험물) Part's 해체 작업</td> <td>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td> </tr> <tr> <td>FAB 內 Plug In 차단기 교체 작업(활선 상태) * 미보양된 설비 스위치 on/off시 해당 보호구 기준 적용</td> <td>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 절연전화 or 절연매트 + 안전화, 활선경보기(양쪽 손목)</td> </tr> <tr> <td>고압 활선근접 측정/작업</td> <td>보안경,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 보안경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td> </tr> <tr> <td>특,고압차단기 현장조작</td> <td>보안경,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HRC4방염 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 * 보안경, 안전모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td> </tr> </table>	Hfo 공정 플라즈마 전처리 장치 PM작업	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or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방열장갑, 방염복	ZrO공정 Dry Pump 이설/철거 작업	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방열장갑, 방염복, 반면형 방독 마스크	ZrO공정 Divert Pump 교체작업	안전모, 안전화, 전면형 방독마스크, 방열장갑, 방염복	Precursor(3류위험물) 용기교체작업(공병해체)	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	Precursor(3류위험물) Part's 해체 작업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	FAB 內 Plug In 차단기 교체 작업(활선 상태) * 미보양된 설비 스위치 on/off시 해당 보호구 기준 적용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 절연전화 or 절연매트 + 안전화, 활선경보기(양쪽 손목)	고압 활선근접 측정/작업	보안경,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 보안경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	특,고압차단기 현장조작	보안경,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HRC4방염 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 * 보안경, 안전모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	<table border="1"> <tr> <td>Hfo 공정 플라즈마 전처리 장치 PM작업</td> <td>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or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방열장갑→방염장갑, 방염복</td> </tr> <tr> <td>ZrO공정 Dry Pump 이설/철거 작업</td> <td>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방열장갑→방염장갑, 방염복→방염복, 반면형 방독 마스크</td> </tr> <tr> <td>ZrO공정 Divert Pump 교체작업</td> <td>안전모, 안전화, 전면형 방독마스크, 방열장갑→방염장갑, 방염복→방염복</td> </tr> <tr> <td>Precursor(3류위험물) 용기교체작업(공병해체)</td> <td>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방염장갑</td> </tr> <tr> <td>Precursor(3류위험물) Part's 해체 작업</td> <td>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방염장갑</td> </tr> <tr> <td>FAB 內 Plug In 차단기 교체 작업(활선 상태) * 미보양된 설비 스위치 on/off시 해당 보호구 기준 적용</td> <td>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HRC4방염장갑, 절연전화 or 절연매트 + 안전화, 활선경보기(양쪽 손목)</td> </tr> <tr> <td>고압 활선근접 측정/작업</td> <td>보안경,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HRC4방염장갑,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 보안경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td> </tr> <tr> <td>특,고압차단기 현장조작</td> <td>보안경,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HRC4방염 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HRC4방염장갑 * 보안경, 안전모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td> </tr> </table>	Hfo 공정 플라즈마 전처리 장치 PM작업	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or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방열장갑→방염장갑, 방염복	ZrO공정 Dry Pump 이설/철거 작업	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방열장갑→방염장갑, 방염복→방염복, 반면형 방독 마스크	ZrO공정 Divert Pump 교체작업	안전모, 안전화, 전면형 방독마스크, 방열장갑→방염장갑, 방염복→방염복	Precursor(3류위험물) 용기교체작업(공병해체)	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방염장갑	Precursor(3류위험물) Part's 해체 작업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방염장갑	FAB 內 Plug In 차단기 교체 작업(활선 상태) * 미보양된 설비 스위치 on/off시 해당 보호구 기준 적용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HRC4방염장갑, 절연전화 or 절연매트 + 안전화, 활선경보기(양쪽 손목)	고압 활선근접 측정/작업	보안경,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HRC4방염장갑,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 보안경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	특,고압차단기 현장조작	보안경,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HRC4방염 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HRC4방염장갑 * 보안경, 안전모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
Hfo 공정 플라즈마 전처리 장치 PM작업	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or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방열장갑, 방염복																																
ZrO공정 Dry Pump 이설/철거 작업	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방열장갑, 방염복, 반면형 방독 마스크																																
ZrO공정 Divert Pump 교체작업	안전모, 안전화, 전면형 방독마스크, 방열장갑, 방염복																																
Precursor(3류위험물) 용기교체작업(공병해체)	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																																
Precursor(3류위험물) Part's 해체 작업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																																
FAB 內 Plug In 차단기 교체 작업(활선 상태) * 미보양된 설비 스위치 on/off시 해당 보호구 기준 적용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 절연전화 or 절연매트 + 안전화, 활선경보기(양쪽 손목)																																
고압 활선근접 측정/작업	보안경,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 보안경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																																
특,고압차단기 현장조작	보안경,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HRC4방염 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 * 보안경, 안전모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																																
Hfo 공정 플라즈마 전처리 장치 PM작업	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or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방열장갑→방염장갑, 방염복																																
ZrO공정 Dry Pump 이설/철거 작업	안전모, 안전화, 고글형 보안경, 방열장갑→방염장갑, 방염복→방염복, 반면형 방독 마스크																																
ZrO공정 Divert Pump 교체작업	안전모, 안전화, 전면형 방독마스크, 방열장갑→방염장갑, 방염복→방염복																																
Precursor(3류위험물) 용기교체작업(공병해체)	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방염장갑																																
Precursor(3류위험물) Part's 해체 작업	전면형 방독마스크(저농도 복합가스용 카트리지+방진필터), 앞 가운 + 방열장갑→방염장갑																																
FAB 內 Plug In 차단기 교체 작업(활선 상태) * 미보양된 설비 스위치 on/off시 해당 보호구 기준 적용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HRC4방염장갑, 절연전화 or 절연매트 + 안전화, 활선경보기(양쪽 손목)																																
고압 활선근접 측정/작업	보안경, HRC4 방염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HRC4방염장갑,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 보안경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																																
특,고압차단기 현장조작	보안경, 활선경보기(안전모, 양쪽손목), HRC4방염 세트(상하의/후드), 방열장갑→HRC4방염장갑 * 보안경, 안전모 대신 안전모일체형 보안경 사용가능																																

주요  
개정내용

- I 대응 필요사항
- 총괄환경안전부서 : 표준개정
- 사업장/사업부환경안전부서 : 개정사항 준수 및 임직원 전파
- 운영부서 : 개정사항 준수 및 협력사 전파
- 협력사 : 개정사항 준수
- 납기 : 즉시

## 2. 대외동향 및 사규 변경 - (규칙) DS부문 안전보호구 기준

※ 문의처 heesoeb.lim@samsung.com, 031-8037-8960

변경사항 적용범위	사업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천안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괄 환경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사업부 환경안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영부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사	
주요 개정내용	<input type="checkbox"/> 방염보호구(방염장갑, 방염절연화) 등록					
	개정 전			개정 후		
			별첨2. [표준보호구 List] - 방염장갑 신규 등록 [ALT KOREA] E06-FR01, XAG-FR02 - 절연화 신규 등록 [WEUS] WS-4100			
						

### I 대응 필요사항

- 총괄환경안전부서  
: 표준 개정
- 사업장/사업부환경안전부서  
: 개정사항 준수 및 임직원 전파
- 운영부서  
: 개정사항 준수 및 협력사 전파
- 협력사  
: 개정사항 준수
- 납기  
: 즉시

[`24년 10월 우수 협력회사 시상 안내]

#3.

# 협력회사 EHS 우수활동



## 협력회사 시상제도란?

우수한 EHS 활동으로 안전한 사업장 형성에 도움을 주신 협력회사에 대한 성취동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상 내역은 추후 계약 EHS평가 가점으로 반영 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 현장 불합리 발굴 우수 시상 종목

- ① 현장 불합리 개선 및 제안 우수 (협력사 환경안전 포탈 개선제안 등록)
- ② 작업중지 활동 우수
- ③ 상호개입(동료/타 협력회사) 우수

## 2024 Best Safety Partners Annual Awards 우수 협력회사

(‘24년 하반기 삼성전자 DS부문 협력회사 안전경영대회 행사)

시상	회사명	우수사례
<b>최우수상</b> 상금 200만원 상패 및 꽃다발	파인텍	사고경보제 시행 이후 14개월 연속 GREEN단계(안전) 유지
	두원이엔지	협력사 안전문화 활동 참여 최우수 (CEO On-Talk, 작업중지 등)

시상	회사명	우수사례
<b>우수상</b> 상금 100만원 상패 및 꽃다발	대명지이씨	FRAM 분석기법 활용을 통한 사고예방
	테키스트	위험작업 Full Process 평가 우수협력사 (2년 연속 90점 이상)
	버숨머트리얼즈 한양기공	도급승인 현장 관리 우수 협력사
	셈아이웁스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적극적으로 개선 활동 진행
	플라즈마텍	안전INDEX 향상을 통한 안전관리 우수 53.4점(23.12월) → 85.9점(24.9월)
	삼성물산 (NRD-K)	안전보건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현장 맞춤형 사례 작성
	샘코씨앤디	위험작업 현장관리 우수
	에이블	협력사 안전문화 활동 참여 우수 (개선제안, 상호개입)



상패

꽃다발



시상식

## Walk Smart Awards

10万  
(상장 포함)

24년 10월 보행안전 우수 협력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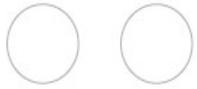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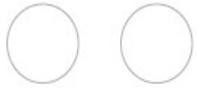
에이치씨엠    진로지스    케이씨이앤씨

맨파워그룹코리아    샘코씨앤디



Best Idea, Best Result

We, SFA is Making the World's Best Products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3. 10. 30.

환경안전팀

# CONTENTS

- I.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규정 등 준수**
  - 근로자의 의무 . . . . . 5
  
- II.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 목적, 대상, 분류 . . . . . 6
  - 교육시간 . . . . . 7
  
- III. 작업중지권**
  - 관련 법규, 작업중지권 단계 . . . . . 8
  - 작업중지 대상 . . . . . 9
  
- IV. TBM (Tool Box Meeting)**
  - TBM의 정의, TBM의 필요성 . . . . . 10
  - TBM 논의 주제 . . . . . 11
  - TBM 진행 순서 . . . . . 12
  
- V.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보호구의 정의 . . . . . 13
  - 보호구의 종류 . . . . . 14
  
- VI.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 . . . 18

# CONTENTS

## VII. 화재 예방

- 화기엄금, 화기작업, 기타사항 . . . . . 20
- 소화기구, 화재 시 대처법 . . . . . 21

## VIII. 당사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및 조치 기준

-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S등급) . . . . . 22
-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A등급) . . . . . 23
-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B등급) . . . . . 24
-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C등급) . . . . . 25

## SFA Safety Golden Rules

### SFA Safety Golden Rules

## SFA Safety Golden Rules

<b>5대 준수 사항</b>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	 규정 작업발판 사용	 개인보호구 착용	 장비별 유도자 배치
<b>5대 금지 사항</b>	 중량을 하부 출입금지	 가동 설비 입의 출입금지	 음주/흡연(지령장소 외) 금지	 안전장치 입의 해제 금지	 무허가/무승인 위험작업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규정 등 준수

-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권리도 갖지만 의무도 갖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안전을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예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가 불행한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각종 안전규정이 있다.
- ✓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며 기준이다.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 목적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 수행하기 위해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 정기, ② 채용 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④ 특별)을 실시하여야 함.

①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 시" 나 "작업설비/작업방법 등의 변경 시"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 및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시 실시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 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작업중지권

### 관련 법규

구분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근로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52조
사업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51조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 및 그와 동일한 작업	법 제55조

### 작업중지권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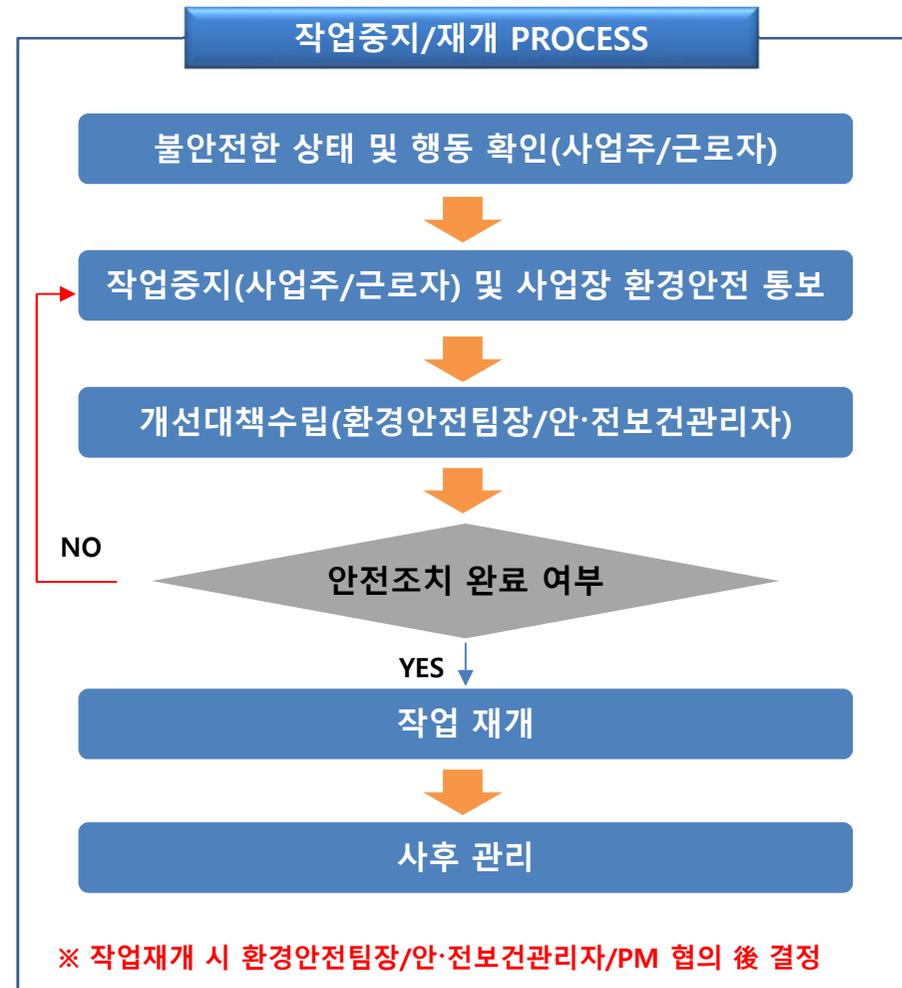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작업중지권

### 작업중지 대상

#### 에스에프에이 사업장 및 숲 현장

-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및 행동
- 즉시 작업중지(4대 중대 불합리)
  - ① 설비내부 작업 시 인터락 키 관리 미흡
  - ② 중량물 인양 시 하부인원 통제 미흡
  - ③ 2M 이상 작업 시 안전고리 이중체결 미흡
  - ④ 미 허가 무단 작업 등(긴급으로 작업 중지가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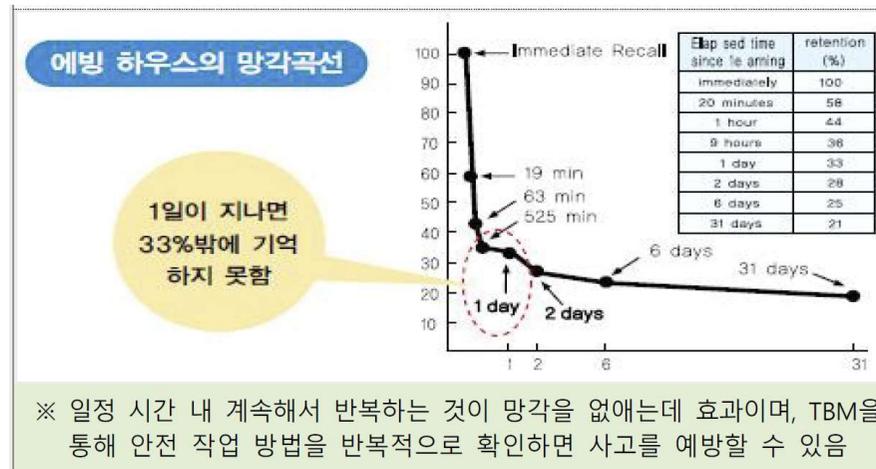
## TBM(Tool Box Meeting)

### TBM의 정의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 전 10분 내외로 작업의 내용과 안전작업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

### TBM의 필요성

- 1) 주기적인 TBM 활동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줌
- 2)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TBM은 작업자가 위험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을 잊지 않게 됨
- 3) TBM은 조직의 안전문화와 인식수준을 향상시킴



## TBM(Tool Box Meeting)

### TBM 논의 주제

논의 주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작업장의 현재 또는 향후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함

- 작업 절차의 변경, 최근 이슈와 사건/사고, 작업 일정, 안전 작업 모범 사례, 신설 장비/설비 사용법 등
- 여러 주제 중 당일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제를 3개 이내로 선정하여 진행

#### TBM 논의 주제 (예시)

- 작업 절차 변경 내용
- 새로운 위험의 식별 및 기존 위험 검토
- 위험요인 통제방안
- 최근 이슈와 사건/사고 사례
- 작업 일정 (일일 또는 주간)
- 안전 작업절차
- 새로 도입되는 장비와 설비의 사용법
- 날씨, 계절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폭염, 탈수)
- 교대 근무에 따라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해야 할 안전 사항



## TBM(Tool Box Meeting)

### TBM 진행 순서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 주관 하에 **오전/오후 작업 시작 전 10분간 TBM**을 실시하여야 함

##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보호구의 정의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



현장에서 기계나 설비 등 **근원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위험을 동반하는 여러 작업조건 및 환경에서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신체를 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보호구의 종류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성능을 **인증(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받은 제품을 사용** [ KCs 마크 확인 ]

※ 성능 인증 비대상 보호구는 타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품 사양, 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 사용

##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보호구의 종류

종류	사진	용도
안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근로자 머리를 보호</li> <li>•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li> <li>• 전기작업 시에는 감전 재해를 예방</li> </ul>
안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량물의 떨어짐이나 끼임 등에 따른 발과 발등 부상 방지</li> <li>•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바닥 보호</li> <li>• 감전 예방과 정전기의 인체 대전 방지,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발을 보호</li> </ul>
안전장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작업에서의 감전 예방</li> <li>•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손을 보호</li> </ul>
안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및 깊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짐 방지</li> </ul>

##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보호구의 종류

종류	사진	용도
보안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광보안경) 자외선, 적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등으로부터 눈 보호</li> <li>• (일반보안경)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물로부터 눈 보호</li> </ul>
보안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보안면)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 보호</li> <li>• (용접 보안면) 용접작업 시 유해광선이나 분진 등으로부터 눈과 안면부 보호</li> </ul>
방진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 분쇄, 광물의 재단, 조각, 연마작업, 석면취급작업, 용접작업 등 분진으로부터 호흡기 보호</li> </ul>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거나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위험 방지</li> </ul>

##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보호구의 종류

종류	사진	용도
보호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작용으로부터 전신 보호</li><li>• 방열복, 화학물질용 보호복으로 구분</li></ul>
방음 보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근로자 청력 보호</li></ul>

##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 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등
- ✓ 경고표지 : 인화성 물질경고, 산화성 물질경고, 폭발물 경고 등
- ✓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등
- ✓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 것, 세안장치 등
- ✓ 관계자의 출입금지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출입금지 등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와의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관계자와의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관계자와의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와의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자추가시 예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ul>				

## 화재 예방

### 화기 엄금

-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불 또는 불로 되는 것)를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화되기 쉬운 것, 예를 들면 성냥, 라이터와 같은 것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 화기 작업

- 화기가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정해진 책임자의 허가를 받는다.
- 반드시 뒤처리를 하고 확실하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다.

### 기타사항

-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 난방용 스토브에는 물 받침에 반드시 물을 넣고 퇴장, 퇴근하는 경우 완전히 소화하여야 한다.
- 기름이 묻은 걸레, 톱밥, 셀룰로이드 등은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있으므로 정해진 통에 넣고 반드시 뚜껑을 덮는다.



## 화재 예방

### 소화기구

- 소화기가 놓여진 장소에는 표시판이 붙어 있다. 작업자는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소화기구의 주위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고 다른 장애물을 근처에 두지 않는다.

### 화재 시 대처법

- 화재를 발견하면 큰소리를 낸다.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해서는 안된다.
- 화재 보고는 가장 빠르게 한다. 전화연락 요령 및 비상연락망을 잘 기억한다.

####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

## 당사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및 조치기준

###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S 등급)

구 분	유 형	조 치	비 고
S 등급 (벌점 15점)	미승인 고위험 작업 진행 (중량물, 고소, 화기, 설비 내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 : 현장 내 전면 작업 중지</li> <li>• 개인 : 위규자 출입 정지 (15일)</li> </ul>	중대재해 야기 안전보건 수칙 위반
	안전 시설물 임의 해체 (인터락, 안전센서 등)		
	건설기계 및 장비 목적 외 사용		
	안전보건관계자 지시 및 통제 불응 (폭언, 폭행, 욕설 등)		
	상하부 동시 작업 (중량물 하부 출입 등)		
	Turn-on 설비 내부 작업 안전수칙 위반		
	사고 은폐		

‘협력사 안전보건 벌칙 기준’에 의거하여 불합리 등급 및 벌점에 따라 Penalty 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당사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및 조치기준

###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A 등급)

구 분	유 형	조 치	비 고
A 등급 (별점 10점)	고위험구간 출입 통제구역 미설정 (상부작업, 건설기계 작업반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 : 해당 공정 작업 중지</li> <li>• 개인 : 위규자 출입 정지 (3일)</li> </ul>	법규 위반  안전보건 수칙 위반
	추락방지 조치 불량 (안전난간, 개구부,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낙하방지 조치 불량 (자재 방치, 샤클/슬링벨트 상태, 고정 상태 등)		
	감전방지 조치 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접지 미실시 등)		
	고소 작업 시 안전고리 미체결		
	화기 작업 시 안전수칙 위반 (불티방지포, 소화기, 화기감시자 등)		
	건설기계 안전수칙 위반 (크레인, 렌탈, 지게차 등)		
	건설기계 및 장비 무면허 운전		
	고위험 작업 시 관리감독자 미상주 (고소/중량물/화기 등)		
	고위험 작업 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고소/중량물/화기 등)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작업장 내 흡연 및 음주		

## 당사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및 조치기준

###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B 등급)

구 분	유 형	조 치	비 고
B 등급 (벌점 5점)	SOP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 : 해당 공정 일시 중지</li> <li>• 개인 : 위규자 출입 정지 (1일)</li> </ul>	법규 위반 안전보건 수칙 위반
	위험성평가 미반영 작업 진행		
	일반 작업 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미인증/미허가 공도구 사용 및 공도구 관리 미흡		
	유해화학물질 관리 위반 (MSDS, 경고표지, 반입 절차 등)		
	사다리 안전수칙 위반 (아웃트리거, 미끄럼/과별림 방지 등)		
	전담 신호수/유도원 미상주		
	적정 작업발판 미사용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미흡		
	전선 및 분전함 관리 미흡		

## 당사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및 조치기준

### 안전보건 불합리 유형 (C 등급)

구분	유형	조치	비고
C 등급 (벌점 3점)	출입통제 및 안전구역 설정 상태 미흡	• 공통 : 개별 시정 조치	관리 소홀 안전보건 수칙 위반
	인동선 및 비상대피로 미확보		
	정리정돈 상태 및 자재 보관 상태 미흡		
	현장별 특성화교육 미이수(내방교육 및 자격/인증 교육 등)		
	서류 관리 상태 미흡 (허가서, 위험성평가, SOP, 점검 체크리스트 등)		
	조도 미확보		
	작업복 상태 불량 (신호수/유도원, 반바지 등)		
	TBM 미실시		
	현장 내 단독 작업 실시		
	기타 안전보건 위배 사항		